

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444호 2020. 10. 16.(금)

입 법 예 고

고성군 공고 제2020-1571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2
고성군 공고 제2020-1576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12
고성군 공고 제2020-1581호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	18
고성군 공고 제2020-158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	23

고 시

고성군 고시 제2020-22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 (동해면-주식회사해교***)	29
고성군 고시 제2020-227호 고성군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고시	30
고성군 고시 제2020-22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[금봉산천(자소지구)일반하천정비사업]	3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고성군, 편집: 군정혁신담당관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0-1571호

**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「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16.

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의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존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문화·예술·관광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고성군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가. ‘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’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근거 명시

- 1) 법적근거 삽입(안 제1조)
- 2) 재단의 설립근거 명시(안 제2조)

나.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명시

- 1)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신설(안 제3조 제1항~제4항)
- 2) 재단 재산의 조성 근거 명시(안 제4조)
- 3) 재산의 출연 등 경비지원 근거 명시(안 제5조)
- 4) 사무의 위탁범위 신설(안 제6조 제1항 ~ 제2항)

다. 입장료 감경 및 이사회 운영 근거 명시

- 1) 입장료 감경 및 보상범위 확대(안 제7조)
- 2) 이사회 운영규정 신설(안 제8조)

라. 상위법률과 중복되거나 정관에 명시하여야할 사항 삭제

- 1) 출연금의 운용, 결산(조례 제5조, 제5조의 2, 제5조의 3)
- 2)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(조례 제6조)
- 3) 보고, 검사 등(조례 제7조)
- 4) 공무원의 파견(조례 제8조)
- 5) 잔여재산의 귀속(조례 제9조)
- 6) 공공시설의 사용(조례 제10조)
- 7) 조례 시행에 필요한사항 시행규칙 제정(조례 제11조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문화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

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문화관광과
- 2) 전화: (055)670-2235, 팩스: (055) 670-220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[전화: (055)670-2235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개정문 1부. 끝.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과 고성군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단의 설립)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“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
2. 지역문화 예술행사, 축제 등 기획 및 운영
3.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가, 경상남도, 고성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
4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업 등

제4조(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 재원은 고성군의 출연금, 재단법인 수익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
제5조(재산의 출연 등)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 및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시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입장료 감경 및 보상) ①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재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유료행사의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, 별도의 군민할인권을 지급하여

일반 입장객과 구분한다.

② 고성군민(군민할인권을 구입한 자)을 제외한 현장입장권 구매자에게는 입장료 범위의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할인 및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**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
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
및 지원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직의 목적과 사업내
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액
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

작성자: 문화관광과장 김 영 국

참고	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45조(재단법인의 정관변경)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46조(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)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설립 목적
 - 2. 주요 업무와 사업
 -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-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지역문화진흥법

- 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0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

제21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·운영)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사업 범위
- 2. 재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- 2.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- 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- 4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- 5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- 6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관광진흥법

제59조(관광지등의 처분)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,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토지·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제69조(관광지등의 관리)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
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공고 제2020-1576호

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16.

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군민들께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관설치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규정에 관련 근거 법령 규정(안 제1조)
- 나.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위치 규정(안 제2조)
- 다. 사용료 면제 규정 중 다자녀 기준 완화(안 제9조)
 -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→ 둘째 이상 가정
- 라.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 조례 규정(제25조)
- 마. 종합사회복지관, 분관의 사용료, 개방시간 개정(안 별표 1, 2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 : 주민생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: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

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주민생활과

2) 전화: (055)670-2352, 팩스: (055) 670-235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과 복지기획담당 [전화: (055)670-2352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개정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34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- 1.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: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
- 2.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: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-3

제9조제1항제7호 중 “셋째”를 “둘째”로, “다자녀 가정”을 “가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<u>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</u>----- ----- 필요-----.</p>
<p>제2조(위치) <u>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</u>은 <u>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</u>에 둔다.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</u>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</u>: <u>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</u> 2. <u>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</u>: <u>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47-3</u>
<p>제9조(사용료 등의 면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6. (생 략) 7. <u>셋째</u>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다자녀 가정</u>(단, 18세 미만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) 8. (생 략) ② (생 략) 	<p>제9조(사용료 등의 면제) ①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둘째</u> ----- ----- <u>가정</u>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■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 [별표1] (현행)

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등(제8조 관련)

1. 사용료

시 설 명	기 준	요 금	비 고
소회의실			
○ 주 간	1회 3시간	20,000원	※ 3시간 초과 매시간
○ 야 간	1회 3시간	25,000원	마다 5,000원 추가

※ 사용시간

- 주간: 09:00 ~ 18:00 (1월 ~ 2월, 11월 ~ 12월은 09:00 ~ 17:00)
- 야간: 18:00 ~ 22:00 (1월 ~ 2월, 11월 ~ 12월은 17:00 ~ 22:00)

2. 수강료

구 분	기 준	금 액
수강료	1인/월	10,000원

※ 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 개정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공고 제2020-1581호

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

「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16.

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- 가. 대전~통영 간 고속도로 개설과 KTX 운행 등으로 인한 사천공항의 이용객 저조로 항공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음.
- 나.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천공항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- 나. 지원내용, 지원신청 방법, 지원금의 교부 등을 규정함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- 다. 지원금의 정산, 지원금의 반환, 지원사업에 관한 감독 등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도시 교통과 교통행정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: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

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도시교통과

2) 전화: (055)670-4683, 팩스: (055) 670-255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[전화: (055)670-4683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 제정(안) 1부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항공사업법」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항공사업자”란 「항공사업법」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·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
2.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내용)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, 방법,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신청)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
2.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
3.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
4.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
5. 운항 사실 기록부
6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7.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

제6조(지원금의 교부)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.

제7조(지원금의 정산)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금의 반환) 군수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
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제9조(감독)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공고 제2020-1584호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0. 16.

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생존 시 최고의 예우를 통해 복지를 향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(안 제2조, 안 제5조)

- “참전유공자의 미망인” 을 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” 로

나. 보훈명예수당 상향(안 제5조제1항제1호)

구분(목)	보훈대상자	보훈명예수당	
		현 행	조정금액
가	6.25전쟁 참전유공자	월 10만 원	월 15만 원
나	월남전쟁 참전유공자	월 10만 원	월 15만 원
다	전몰군경의 유족	월 5만 원	월 10만 원
라	전상군경	월 5만 원	월 10만 원
마	전상군경 유족	월 5만 원	월 10만 원
바	무공수훈자	월 5만 원	월 10만 원
사	보국수훈자	월 5만 원	-
아	독립유공자 유족	월 5만 원	월 10만 원
자	공상군경	월 5만 원	월 10만 원
차	공상군경 유족	월 5만 원	월 10만 원
카	순직군경 유족	월 5만 원	월 10만 원
타	참전유공자 미망인	월 5만 원	월 10만 원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 : 주민생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: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

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주민생활과
- 2) 전화: (055)670-2325, 팩스: (055) 670-235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[전화: (055)670-2352]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개정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나목 중 “참전유공자의 미망인” 을 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” 로 한다.
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“10” 을 각각 “15” 로 하고,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
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 중 “5” 를 각각 “10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타목을 다음
과 같이 한다.

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월 10만 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국가보훈대상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<u>참전유공자의 미망인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(이하 “명예수당 등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보훈명예수당</p> <p>가. 6.25전쟁 참전유공자: 월 <u>10</u>만원</p> <p>나. 월남전쟁 참전유공자: 월 <u>10</u>만원</p> <p>다. 전몰군경의 유족: 월 <u>5</u>만 원</p> <p>라. 전상군경: 월 <u>5</u>만 원</p> <p>마. 전상군경 유족: 월 <u>5</u>만 원</p> <p>바. 무공수훈자: 월 <u>5</u>만 원</p> <p>사. (생 략)</p> <p>아. 독립유공자 유족: 월 <u>5</u>만 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<u>사망한</u> <u>참전유공자의 배우자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가. ----- <u>15</u>---</p> <p>나. ----- <u>15</u>---</p> <p>다. ----- <u>10</u>--</p> <p>라. ----- <u>10</u>---</p> <p>마. ----- <u>10</u>----</p> <p>바. ----- <u>10</u>---</p> <p>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아. ----- <u>10</u>--</p>

자. 공상군경: 월 5만 원
 차. 공상군경 유족: 월 5만 원
 카. 순직군경 유족: 월 5만 원
 타. 참전유공자의 미망인: 월 5만
 원

2. (생 략)

② (생 략)

자. ----- 10---

차. ----- 10----

카. ----- 10----

타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
 월 10만 원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고시 제2020-22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. 10. 16.

고 성 군 수

1. 허가 개요

- 가. 허가번호: 제2020-25호(2020. 10. 16.)
- 나. 사업명: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대체구거 설치
- 다. 신청인: (주)해교***
- 라. 주소: 경남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길
- 마. 점용장소 및 면적

공유수면 구분	위 치					지 적 (㎡)	점유면 적 (㎡)	소 유 자	비고
	읍면	리	지번	지목	인근지번				
육상 공유수면	동해	외산	1087	구거	718-3구	767	352 (60)	국(건설부)	

- 바. 점용목적: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대체구거 설치(진입로사용 A=60㎡)
- 사. 점용기간: 2020. 10. 16. ~ 2035. 12. 31.

2. 허가관련 서류 및 도면: 별도 비치(고성군 안전관리과)

3. 문의처: 고성군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자(☎055-670-2764)

고성군 고시 제2020-227호

고성군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고성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빈집실태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.

2020. 10. 15.

고 성 군 수

1.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

- 취 지: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방치된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위한 기초자료 확보
- 법적근거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2(빈집등 실태조사)
 - 시장, 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빈집의 관리·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2.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

- 기 간: 2020. 10. ~ 12.
- 대 상: 고성군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건축물 1,431동
 - ※ 조사과정에서 대상 동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3. 조사의 내용

- 빈집여부 확인 및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
-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
-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
-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4.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

- 대행근거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2 제2항
- 대행기관: 한국감정원

5. 기타사항

빈집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성군 건축개발과(☎055-670-21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고성군 고시 제2020-228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(협의)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10. 14.

고 성 군 수

- 1. 허가번호 : 고성2020-4호
- 2. 하천의 명칭 : 금봉산천
- 3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(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)
 - 성 명 : 고성군(안전관리과)
 - 주 소 : 경남 고성군·읍 성내로 130
- 4. 점용의 목적 및 개요
 - 금봉산천(자소지구)일반하천정비사업
 - 하천정비 L=208m, 교량재가설(L=20m, B=6.0m)
- 5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치 :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460-10번지 외 5필지
 - 면적 : 1,304㎡
- 6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0. 10. 14. ~ 영구
- 7. 문의처 :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(☎055-670-2763)

